

4. 建設業法施行規則中改正令

建設部令 第530號 1993. 7. 9

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건설부령 제525호 건설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1항이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, 제17조제3

항 본문의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당초 1993년 7월 1일부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, 기술인력의 확보등 건설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건설업법 시행령이 개정(1993. 6. 26. 대통령령 제13,916호)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건설부 제공>